



張 師 範

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경

제분야의 UN(국제연합)이라고 일컬어지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지난 1월 1일 출범했다. 약 8년동안 세계 뉴스의 촛점이 되어왔던 UR 협상이 드디어 WTO 체제라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창출하고 막을 내린 것이다.

WTO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제도상·관행상의 장벽들을 제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질서를 세우으로써 세계무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WTO는 회원국간의 교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규율하는 협정(법)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및 담당기구도 가지고 있다.

사실 WTO 출범 이전에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국

제무역을 규율하는 체제는 있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GATT는 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협정에 불과했으며, 그 규율대상은 공산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새로 출범한 WTO는 GATT와는 달리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이며, 그 규율대상은 공산품이외에 새로운 분야로서 최근 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분야, 투자(자본이동), 지적재산권, 농산물, 과거 GATT 규범이 적용되지 않던 섬유부문까지도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이 훨씬 강화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WTO 체제는 수입물량제 한율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기존의 GATT하의 교역규범들을 더욱 명료화하는 등 종전의 GATT 체제에 비해

세계무역의 확대를 가져올 제도적 개선을 이룩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환한 것이 한국의 석유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우선 관세부문에서 납사, LPG, 윤활유등 우리가 최고관세율을 양허한 품목들은 그 이행기간(5년)이 지난 후 부터는 양허세율(석유제품류 5%, 윤활유류 13%)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없게 되며, 통관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도 양허표에 기재된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등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관세 및 기금을 자유로이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종세제, 금융상의 일부 지원제도 중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제도가 폐지대상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한 검토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에 의한 각종 지원제도는 석유의 수출을 보조하거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폐지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이 2가지 외에 석유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실, 이런 정도의 변화라면 그다지 대단한 변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이 한국의 석유산업에 미칠 영향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후속협상들에 크게 달려 있다.

우선, WTO 협정은 서비스 부문의 협상을 WTO 출범이후에도 계속 진행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협상은 유통서비스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석유유통업도 개방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주유소업이 개방된다면 외국계 기업에 의한 석유수입도 활성화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WTO 협정 상 수입허기에 있어서는 모든 수출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와 외국인도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응

하는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입허가를 불공평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WTO 협정상 투자관련규정은 너무 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아래 OECD, APEC 등에서 새로이 강화된 형태의 투자관련규범을 제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논의의 진전에 따라 정유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50%) 규정이 폐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또 WTO 협정에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으로 그쳐있는 문제로서, 각국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구체화될 경우, 각국의 가격규제 및 독과점규제 등을 규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가격 규제와 주유소 거리제한·면적제한 등도 국제규범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WTO 체제 출범에 따라 한국석유산업이 받는 영향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서비스 협상 등 후속협상의 결과가 구체화될 때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바야흐로 국제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의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제는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 및 지적재산권도 자유무역의 대상이 되었고, 서비스 부문에서도 금융, 기본통신분야, 해운, 여행·관광, 노동력 이동,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까지도 자유화하고 개방하고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산품의 일종인 석유에 대해서도 전 산업의 기반이 되는 특별한 에너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수성을 주장하여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석유산업 자유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조만간 석유산업의 전면 자유화 및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WTO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